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124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천연가스에 대한 기본 관세율 무세화(허성무의원안)	2

I. 개요

1.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12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8. 12.
- (3) 회 부 일 : 2025. 8.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3%의 기본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가 주택용 가스요금의 인상,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쟁력 약화, 전기요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또한, 한국의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보호해야할 국내 산업이 없고, 천연가스 수입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미국, EU, 일본, 대만 등)를 반영하여 관세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하여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무세(無稅)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천연가스에 대한 기본 관세율 무세화(허성무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천연가스에 대한 기본세율 (「관세법」 별표)				□ 천연가스에 대한 관세 기본세율 무 세화(「관세법」 별표)			
호	소호	품명	세율	호	소호	품명	세율
2711	11	천연가스(액화한 것)	3	2711	11	천연가스(액화한 것)	무세
2711	21	천연가스(가스 상태인 것)	3	2711	21	천연가스(가스 상태인 것)	무세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허성무의원안 2025. 8. 12. 발의(의안번호 12124)

□ 개정안은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무세(無稅)의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천연가스(2711.11, 2711.21)를 무세화(無稅化)하려는 것임.

□ 현재 천연가스 수입에 대해서는 3%의 기본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에너지(LPG, 원유 등)와 모두 동일한 기본 관세율 수준임.¹⁾ 개정안과 같이 천연가스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무세화하는 개정안은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음.

첫째, 천연가스와 관련된 소비자 물가를 안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1) 자원 절약, 환경 보호, 세수 확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발생 시 할당관세를 통한 가격 완충 기능 등 감안하여 '07년부터 모두 기본관세율을 5→3%로 인하하였음.

보임.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는 주택용 가스요금의 인상, 천연가스를 사용한 산업체의 가격 부담의 상승을 유발하는데, 개정안과 같이 천연가스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물가 안정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현재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에너지원(원유, 천연가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할당관세는 정부가 매년 재량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무세화하는 것이 예측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음.

셋째,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천연가스 무관세를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쟁 산업이 존재하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천연가스의 무세화는 세수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을 위해 천연가스에 대해 할당관세를 지속적으로 적용하였고 2024년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연중 0%의 관세 적용)은 대략 5,249억원임. 천연가스 가격 추세를 감안할 때, 천연가스 무세화는 2024년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 이상의 세수 일실을 초래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현재 주요 에너지원(천연가스, 원유, LPG)에 대해서도

모두 동일한 기본관세율을 적용 중인데, 천연가스에 대한 무세화가 도입될 경우 원유·LPG에 대한 무세화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추가 세수 일실의 발생이 가능함.

둘째, 기본관세의 무세(0%)화는 향후 FTA 등 체결 시 협상력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²⁾. 향후 러시아·남미 등과의 FTA 협상력 제고³⁾를 위한 협상 레버리지가 필요하며,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주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⁴⁾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른 경우 관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HS CODE⁵⁾ 10자리까지 구분된 품목별 관세 징수실적 자료가 없어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58

2) 기획재정부 의견

3)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 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 진행 중

4) 현재 호주, 미국 등 FTA 체결국으로부터 0%의 관세로 천연가스를 수입가능하며 2024년 LNG 수입량은 호주 1,140만톤, 말레이시아 613만톤, 미국 564만톤, 인도네시아 304만톤임.

5) 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됨.